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충질문

김정택 의원.

2015희망 마라톤 추진상의 문제와 개선요구에 관한 보충질문

○ 의회 2015년 본예산 심의에서 해당 예산을 2015 안산바닷길 마라톤 대회라고 편성했고 예산서에도 2015 안산바닷길 마라톤 대회라고 명시된 사항이며

상임위와 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심의 받은 안산바닷길 마라톤 대회로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사업을 변경 추진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에도 예산 심의 후 사업을 변경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 2016년 대회 추진시 2015년 대회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육상경기연맹과 육상연합회, 마라톤동호인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회 개최 장소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1. 2015년 대회 성과분석의 구체적인 기준
2. 코스 및 장소 변경에 따른 2015년 대회 예산 절감 계획
3. 2016년 대회 개최를 위한 객관적인 의견수렴 계획
4. 2016년 대회를 현행의 희망마라톤으로 추진시 2015년 본예산 반영 예산규모 및 주최 주관 등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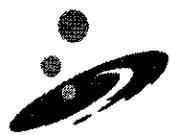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 제고 방안 중 안산시 산하기관의 내부 규정과 예산서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안산시가 자치법규와 예산서 등을 공개하는 것처럼 공개방안 마련 및 추진일정

2015.7.15.(수) 10:00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정 질 문 답 변 서
[추가질의 서면답변]

< 서면 질문 : 1의원 2건 >

【 서 면 답 변 】
○ 김정택 의원 : 2건



안 산 시

□ 김정택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2015 희망마라톤대회 추진상의 문제와 개선요구』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2014년 대회 성과분석의 구체적인 기준?
- 코스 및 장소 변경에 따른 2015년 대회 예산 절감 계획?
- 2015년 대회 개최를 위한 객관적인 의견수렴 계획?
- 2016년 대회를 현행의 희망마라톤으로 추진시 2015년 본예산 반영 예산규모 및 주최, 주관 등 운영 방안은?

- 먼저 2014년 대회 성과분석의 기준에 대하여는, 2014년 11월 9일 대회 종료 후 2014년 11월 25일 주관단체인 체육회·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육상경기연맹, 육상연합회와 유관기관·단체인 단원경찰서, 자원봉사센터, 도시공사, 기획사 등과 함께 평가보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평가보고회에서 대회 개최장소가 대부바닷길 보다는 시내에서 개최 시 접근성 용이, 자원봉사자 참여율, 부대시설 활용 등 장점이 많다는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와 스타디움에서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코스, 장소 변경에 따른 2015년 대회 예산은, 시비 250,000천원과 참가비 예상액 90,000천원 등 사업비 340,000천원 중 시비 50,000천원 이상을 절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16년 대회 개최를 위한 객관적인 의견수렴은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육상경기연맹, 육상연합회와 마라톤 참가자 및 동호인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16년 대회를 현행의 희망 마라톤으로 추진 시 본예산 반영 예산규모 및 주최, 주관 등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은 개최장소 변경에 따라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주최, 주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운영 단체와 충분히 협의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 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산하기관의 내부 규정과 예산서에 대한 공개방안 마련 및 추진일정』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 제고 방안 중 안산시 산하기관의 내부 규정과 예산서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안산시가 자치법규와 예산서 등을 공개하는 것처럼 공개방안 마련 및 추진일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 전년도 결산서,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성과계약서 상의 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외부 기관의 감사결과·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산하기관의 내부규정 및 예산서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있으나 공공기관의 내부자료에 대한 공개 추세에 맞추어 2015년 12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